

사고력 시험으로서의 법학적성시험

민 찬 흥

【국문요약】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법학적성시험의 개발 과정 및 초기 구상을 설명하고,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시험의 기출 문항을 내용 영역별, 인지활동 영역별로 분류하고 주요 특징을 기술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주요어】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독해, 추리, 비판,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1. 개발 및 초기 구상

1) 개발 배경

법학적성시험(LEET)이 시행된지 5년이 되었다. 2006년 교육부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따른 입학 시험 문제를 개발하는 과제를 의뢰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진을 구성하였고, 이 연구진은 법학적 전문 지식을 포함한 모든 전문적인 학술 분야의 지식, 특히 법학의 전문 지식을 묻지 않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요구하는 지적인 능력을 검사하는 시험이 어떤 것들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그런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와 조직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문항을 제작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미국의 LSAT, 일본의 법학적성시험, 그리고 한국의 공직적성시험(PSAT) 등의 선례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수준과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의치의학입문시험(MEET/DEET) 등 그간 평가원이 주관해왔던 시험의 출제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험의 형태와 내용에서 뿐 아니라 출제의 전 과정이 대학과 법조계를 포함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승인 내지 수용할 수 있을 수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연구진은 (1) 이 시험은 수험생이 무엇을 아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분석하고 그것을 변환·추리하는 등의 정보처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며, (2) 법학적 지식을 포함하여 특정한 전문적 지식이나 장기간의 교육, 훈련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한 국내외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생산되는 일상어 문헌과 그 내용을 폭넓게 다루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하고, 이런 원칙을 반영하는 성격의 시험이 갖추어야 할 형태를 구상하게 되었다. (1)이 말하는 것은 결국 이 시험이 언어 능력 및 사고력 시험이 되어야 함을 뜻하며, (2)가 요구하는 것은 이 시험이,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 모든 학문 분야에서 생산하는 텍스트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연구진은 우선 시험 과목을 언어 능력을 중점적으로 묻는 과목과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묻는 과목으로 나누었고, 각 과목에 대하여 문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지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문항이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 문항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일종의 이원분류표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이라는 법학적성시험의 두 과목이 만들어졌다. 연구의 첫 단계에서 논술 시험은 시행상의 난점들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치르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이 이원분류표를 토대로 연구진은 예시 문항을 개발하였고, 시험의 성격과 형태에 대하여 공청회를 가졌다. 당시 로스쿨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 공청회에는 대학과 법원, 변호사회 등 법학 관련 기관들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는데, 참석하였던 거의 모든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논술 시험의 시행을 요구하였다.

2007년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평가원은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먼저 전년도 공청회에서의 일치된 요청에 따라서 논술 시험 과목을 추가하기로 하고, 시험의 형태, 출제, 채점 등 논술 시험 시행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와 동시에 총 세 과목의 이원분류표에 따르는 문항 개발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출제인력 풀을 구성하여 문항 개발을 발주, 출제하고 합숙, 검토하는 과정을 시행해 보기 위하여 2008년 겨울 로스쿨 지망생을 대상으로 모의 시험을 실시하였고,

2008년 여름 2009학년도 입학 시험부터 본 시험이 시행되었다.

2011학년도까지 평가원의 주관에 의해 시행되던 시험은 2012학년도부터는 시험의 발주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직접 주관하는 형태로 치러졌으며, 이제 다섯번의 본 시험을 치른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시험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2) 언어이해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는 세 과목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출발하였다. 평가원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 시험을 십여년 시행해 왔고, 그에 더하여 최근 4년간 시행된 의치 의학입문시험에서 ‘자연과학추론’ 시험과 함께 ‘언어추론’ 과목을 시행하면서 대학 졸업생 수준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난도의 언어 능력 시험까지 출제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법학적성시험의 성격과 시험 과목들 간의 영역 분담을 고려한 결과, 연구팀은 『언어이해』 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항 설계에 도달하였다.

< 표 1 > 언어이해의 이원분류표

인지활동유형 내용영역	어휘	분석	추론	비판	창의
국어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문학·예술					

『언어이해』 과목의 인지활동 요소로서 ‘분석’이라 함은 제시문에 명시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분별, 파악, 접수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추론’은 제시문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 즉 암묵적 전제나 가정, 원칙, 결론, 관점 등을 추리해내는 활동을 가리킨다. ‘비판’은 제시문이 담고 있는 정보의 진위를 검토하거나, 제시문의 주장 내지 결론의 타당성 또는 설득력을 글쓴이가 제시한 또는 가정한 근거들에 비추어 검토하는 일을 포함하여 글쓴이가 사태를 보는 관점을 짚어 내어 검토하는 등의 활동을 가리킨다. ‘분석’은 “지문 안에서 생각하기”이고, ‘추론’은 “지문으로부터 생각하기”라면 ‘비판’은 “지문에 대하여 생각하기”에 해당된다. ‘창의’적 사고 또는 발산적 사고를 묻는 선다형 문항이 가능한가, 도대체 그런 사고가 그렇게 점수매겨질 수 있는가 등등, 출제 종사자들에게 악명 높은 물음들이 있지만, 이점을 논외로 하고 앞의 비유를 이어가자면 ‘창의’는 “지문을 넘어서서 생각하기” 정도가 될 것이다. ‘어휘’는 어휘력이 언어 능력의 기초가 된다는 원리적인 고려 뿐 아니라, 실제로 어휘력 검사가 수험생의 언어 능력의 중요한 부분을 매우 잘 반영한다는 교육학적 고려에 따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언어이해』의 내용 영역은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 및 기술, 문학 및 예술, 이렇게 네 범주를 통해서 적어도 대학에서 가르쳐지는 전 학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물론 단 한 번의 시험에서 예를 들어 사회과학에 속하는 온갖 학문 분야의 내용을 골고루 반영할 수는 없다. 위 분류표가 의미하는 것은 각 범주에 속하는 학문들은 언제라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 범주들 각각은 한 차례의 시험에서 동등한 정도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언어이해』 시험이 열두 개의 지문을 제시한다면 매 번의 시험에서 인문학에 속하는 학문 내용을 다루는 지문은 세 개가 된다. ‘국어’는 인지활동영역의 ‘어휘’를 묻는 문항과 관련되면서, 한편으로 언어 시험 문항의 출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출제 위원에 고정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장치로도 기능하였다.

위 이원분류표는 수능의 ‘언어영역’ 시험이나 의치의학입문시험의 ‘언어추론’ 과목의 문항설계와 대동소이한 편이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는 수능의 ‘언어영역’이나 의치의학입문시험의 ‘언어추론’과는 문제의 형태와 내용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엇보다도 ‘언어영역’, ‘언어추론’은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으로서, 그 범위가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의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수능의 ‘언어영역’은 일상언어와 관련한 언어 능력 및 사고력을 검사하는 시험이면서 고등학교 국어 교과에서 가르치는 수준의 문학적 소양의 검사까지 포함하는 시험이다. 의치의학입문시험의 ‘언어추론’은 문학적인 텍스트를 다루더라도 그것을 일상 언어의 텍스트로 간주할 뿐 그것을 읽어내는 문학적 소양을 검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시험은 언어 능력 및 추리력 비판력 등의 사고력 검사까지 포함하는 시험이다. 더구나, ‘언어추론’은 기획의 초기 단계에 의학전문대학원 협의체로부터 인문사회과학에서 최소한의 소양 검사까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던 터라 순수한 언어 능력 및 사고력 시험으로 보기에는 제시문의 내용이 다소 전문적인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편이었다.

위의 이원분류표는 『언어이해』 과목에서 실제로 『추리논증』 과목을 통하여 물으려는 것들을 이미 다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에서 포괄적으로 언어 능력 및 사고 능력을 검사하고, 다시 『추리논증』이라는 과목에서 사고력을 검사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진의 당시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언어이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표와 그래프 등의 수리적인 자료까지 포함할 수 있는 다소 넓은 의미에서) 일상 언어로 제시된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에는 어떤 정보들은 명시되어 있고, 어떤 정보들은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며, 어떤 정보들은 그 자료가 쓰여진 상황과 결부시켜 이해할 때에 화용론적으로 함축되어 있고, 등등,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해했는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행간에 숨은 전제를 추리해내도록 요구할 필요도 있고, 글쓴이가 제시하는 논거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잣대를 대보도록 요구할 필요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독해력을 제대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추리력, 비판력 등의 사고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언어이해』가 추리, 비판 등의 인지 활동을 요구하는 문항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물론, 『추리논증』은 추리하는 능력, 논증 다루는 능력 자체를 검사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그런 문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때로 매우 유사한 인지 활동을 요구하는 문항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것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언어이해』는 이해력 검사를 본령으로 하는 것으로 추리력이나 비판력 등을 포괄적으로 본격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으므로, 문항들 일부가 유사한 발문을 취하더라도 과목 전체의 방향 내지 무게중심은 『추리논증』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경계선이 분명치 않다고 해서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시 연구진은 이 문제를 잘 의식하고 있었으며, 두 과목을 차별화하는 것이 두 과목의 모든 문항들이 현저한 질적인 차이를 보여 주도록 제작되기는 어렵더라도, 두 과목의 차이는 누구나 인정할만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되, 가능하다고 믿었다.

3) 추리논증

『추리논증』은 크게 추리 능력을 검사하는 문항들과 논증을 다루

는(argumentation) 능력을 검사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추리 능력을 검사하는 문항들은 다시 ‘언어(verbal) 추리’, ‘수리 추리’, ‘논리 게임’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논증력을 검사하는 문항들은 ‘분석 및 재구성’, ‘반론 및 논쟁’, ‘판단 및 평가’라는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단, ‘추리’ 영역과 ‘논증’ 영역의 하위 영역의 분류는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고 있지 않다. ‘논증’의 경우 ‘분석 및 재구성’, ‘반론 및 논쟁’, ‘판단 및 평가’는 논증을 다루는 단계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논증이 주어지면 우리는 먼저 그것이 명시한 결론과 근거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생략된 것들을 찾아서 논증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그 논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논증에 대한 반론의 여지를 모색하고, 반론을 제기해보며, 그에 대한 대응을 찾아보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논증 전체 또는 논증의 부분적인 점들에 대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논증의 세 하위 범주는 논증다루기의 단계들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표 2 > 추리논증의 이원분류표

인지활동유형 추리의 내용영역	추리			논증			인지활동유형 논증의 내용영역	
	언어 추리	수리 추리	논리 게임	분석 및 재구성	반론 및논쟁	판단 및 평가		
논리학·수학								
인문학							인문학	이 론 적 논 변
사회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과학기술	
							일상적/도 덕적 논변	실 천 적 논 변
							정책/의사 결정	
							법적 논변	

그런데, ‘추리’ 영역의 분류는 단계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제재에 따른 구분에 가깝다. ‘언어추리’는 일상어를 제재로 삼는 추리를 일컬으며, ‘수리추리’는 수, 기호, 그래프, 표, 도형 등을 소재로 하는 추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논리게임’은 제재에 따른 구분의 한 유형도 아니다. ‘논리게임’은 제재로 보자면 언어추리일 수도 있고, 수리추리일 수도 있고 그 둘의 결합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추리’ 영역의 하위 분류는, ‘논증’ 영역과 구분 기준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하나의 기준에 따른 분류로 보기도 어렵다.

이런 논리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분류법에 대한 연구진의 변명은, ‘출제는 과학(science)이 아니라 기술(art)’이라는 것이었다. 한 세트의 시험 문항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검사하고자 하는 능력을 어떤 식으로든 영역 구분하여 세목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검사하려는 능력 전반을 검사하되 문항들이 균형잡힌 분포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언어추리’와 ‘수리추리’라는 구분은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이 시험의 성격을 고려할 때, 두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이 양적으로 비슷해서는 안되고, 언어추리에 속하는 문항들이 훨씬 더 많아야 하겠지만) 적절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논리게임’ 영역은 출제 과정을 관리하는 데 적합한 범주였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다. 국어학자라야 어휘 문제를 제대로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학자/수학자라야 논리게임 문제를 제대로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이원분류표의 현실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논증’의 ‘분석 및 재구성’ 범주와 ‘추리’의 ‘언어추리’ 범주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숨은 전제 찾기는 암묵적인 정보를 찾아내어 논증을 재구성하는 차원의 활동이라고 보아서 분석 및 재구성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숨은 전제를 찾기 위해서는 추리가 요구되

고, 그 추리가 간단치 않을수록 문항은 ‘추리’ 문제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논증’의 ‘반론 및 논쟁’에서 논지 강화/약화를 묻는 문항도 같은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염려되었다. 주어진 사실이 논지를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판단하는 일은 전형적으로 논증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활동에 속하는 것일텐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추리가 요구되고, 이 추리가 복잡하면 이 문항은 추리력을 묻는 문항으로 기울게 된다.

유형의 구분이 분명치 않은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더 발견된다. 어떤 문항은 ‘논리게임’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언어추리’나 ‘수리추리’ 문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 결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들은 위의 이원분류표가 이론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출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점은 어떤 분류를 현실에 적용하려 할 때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찌면 중요한 것은 문항들을 분류해주는 조작적(stipulative) 기준을 마련해서 제작된 문항들을 분류하되, 문항들이 전체적으로 목적에 합당한 배치와 분포를 이루도록 맞추어 가는 일일 것이다.

‘언어추리’와 ‘수리추리’ 문항들을 다시 하위 범주로 분류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사정은 더 나쁘다. 사정상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언어추리’에 속하는 문항들은 ‘명제논리적 추리’, ‘양화논리적 추리’ 등으로 세분하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논리학의 이론적 관점에 입각한 분류라고 할 수 있겠다. ‘수리추리’는 ‘수리/대수적 연산’, ‘도형 및 기하’, ‘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등의 하위 범주로 세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학의 영역 구분에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자의적인 범주들을 덧붙인 꼴로 되어 있다. 이

런 분류들을 출제 현실을 고려한 분류로 좋게 보아 넘긴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분류만 가지고는 추리 문항의 성격의 중요한 점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두 가지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수리추리이든, 언어추리이든 문제 해결 방식의 성격을 분류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내는 것은 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과정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원분류표를 갖는 것은 문제이다. 그러한 이원분류표에 따른 출제 계획은 문제 해결 방식의 성격에 따라 문항들을 구상, 제작하는 일을 놓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인지 활동의 차이를 분별하는 일에 관한한 이 이원분류표는 아무런 통제력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리논증』의 경우, 시험의 틀을 결정하는 이원분류표 자체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재검토, 현실적인 출제 과정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였다.

4) 논술

연구의 초기에 『추리논증』 과목의 ‘논증’ 영역은 서답식 시험을 포함하는 논술 시험 형태로 치르자고 제안되었었다. 그렇게 하면 시험 과목은 ‘언어’, ‘추리’, ‘논증’ 정도의 과목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그러한 제안은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접수되지 않았었다. 이런 내막 때문에 논술 과목의 처음 구상은 ‘논증적인 텍스트를 주고 분석, 재구성, 반론, 비판 등의 작업을 요구하는 서답식 문항들’에 ‘에세이 쓰기 문항’이 보태어진 형태였다.

예비 검사의 『논술』 문항은 이러한 역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몇 줄로 답하는 형태의 서답식 문항은 배제하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주어진 텍스트를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문항, 덧붙여 제시된 자료에 기대서 주어진 논증을 비판하는 문항, 그리고 통상적으로

‘전형적인 논술 문제’라고 간주될 수 있는 이른바 ‘에세이’ 문항, 이렇게 세 문항의 결합 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논술』의 이원분류표는 『논술』 문항의 유형을 이런 형태로 고정하지 않고 있었다.

< 표 3 > 논술의 이원분류표

내용영역	인지활동유형	분석		구성		
		논제 분석	제시문 분석	논증	창의	표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공학, 학제적 연구 분야 등 전 학문 분야						

이 이원분류표는 『논술』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텍스트에 접근하는 데 동원되는 사고력(분석)과 논리적으로 글을 엮어내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사고력(구성)으로 구분한다. 분석 능력을 다시 논제의 분석과 제시문의 분석으로 구분하는 데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구성하는 사고능력을 ‘논증’, ‘창의’, ‘표현’이라는 범주로 세분한 것은 논술 시험이 주관식 논리학 시험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력 및 언어 능력 시험이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고려에서 글을 구성함에 있어서 글의 논리적 측면 이외에 작문의 측면(표현)을 설정하고, 더불어서 ‘창의성’을 그 두 기준 못지 않게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2. 기출 문항의 분석

1) 문항의 내용 분포

2009학년도 첫 시험의 시행 이후, 법학적성시험은 초기 구상의 틀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시험의 내용 및 성격, 특히 문항들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에서 상당한 변모를 겪었다. 무엇보다 초기 시험

은 수리 추리 및 자연과학을 제재로 하는 추리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대학 졸업생들의 일반적인 학업적성을 묻는 시험이었다면 이것이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이 시험이 ‘법학’ 적 성시험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수리 추리, 자연과학 추리의 비중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고, 특히 법학교육계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법학적성시험의 타당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지적에 대응하여, 법학적성시험은 해가 가면서 언어추리의 비중을 높이고, 수리 추리의 비중을 줄이는 한편, 자연과학을 제재로 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수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인문/사회과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추리』보다 『추리논증』 과목의 경우에 더 두드러졌다.

『언어추리』와 『추리논증』 양 과목의 내용 영역에서는 법학 관련 텍스트를 제재로 다루는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변화도 서서히 이루어졌다. 법학적성시험이 수험생의 법학적 지식을 묻지 않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시험이 선발하려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법학도 인만큼 법학 관련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시험과 교육 성취도의 상관도를 높으리라는 기대는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 또, 추리와 논증 문항들에서도 논리적 사고의 내용 민감성(content sensitivity)를 고려할 때, 법학 관련 제재에서 추리력과 사고력이 더 잘 활성화되는 사람을 고르는 편이 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리라고 보였다.

사실, 이런 점들은 초기 구상에서도 고려되었던 점들이었다. 『언어이해』의 내용 영역 배치를 고려할 때, 또 『추리논증』의 내용 영역에서 ‘논증’의 ‘실천추리’ 항목을 설치할 때 고려했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점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몇 차례의 시행 후, 시험 수주 측의 견해 및 일반 여론의 요구는 법학 관련성을 더 강화하라는 것이었고, 이러한 요구는 시험 내용의 변화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다음의 표에서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변화가 잘 드러난다.

< 표 4 > 언어이해 문항의 내용 분포

	예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어휘어법	4	4	3	3	3	3	20
인문	6	6	6	6	6	6	36
문학예술	9	9	6	6	6	6	42
사회/법	12	12	14	14	14	14	80
과학기술	9	9	6	6	6	6	42
총문항수	40	40	35	35	35	35	

‘인문’ 영역은 사학과 철학이 각각 한 지문씩 두 개의 지문이 출제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문학예술’ 영역은 문학작품 하나와 예술학/미학 지문 하나가 출제되었고, 과학은 이론적인 과학과 응용 기술과학에서 하나씩 두 개의 지문이 출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사회/법은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기초법학, 등의 영역에서 출제되었으며, 2010 이후 법 지문이 두 개 정도 출제되었다.

문학 작품의 경우, 그간 언어 시험들에서 국문학 작품이 배타적으로 출제되어 오던 것에 반해 이 시험에서는 외국 문학 작품들을 다루려는 시도가 특징적이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경우, 문학 감상 문제는 문학적 소양을 묻는 것으로서 관련 학문 분야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은 출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되었으므로, 문학 작품을 하나의 일반적인 글로서 다루는 식으로 문항들이 제작되어야 했는데, 문학 작품을 일반적인 정보적인 글로써 읽는 일이라면 대학 졸업생 수준의 고급 언어사용자들에게 물어질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가 늘 논란되었다. 이 시험이 대학 교육 및 대학생의 학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출제에 문학 작품을 포함시키는 것의 의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정보적 글읽기의 대상으로 간주할 때 문학적 텍스트는 수험생들에게 변별력을 가질 정

도의 내용 함량 또는 가치를 갖기 어려웠던 것이다.

< 표 5 > 추리논증 문항의 내용 분포

	예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논리,수학	4	5	4	4	3	6	26
인문	8	7	6	7	5	7	40
사회	10	7	10	9	10	7	53
과학기술	9	9	6	4	7	6	41
도덕적논변	2	4	2	2	2	0	12
의사/정책결정	2	4	0	0	0	0	6
법적논변	4	4	7	9	8	9	41
총문항수	40	40	35	35	35	35	

『추리논증』의 경우, 초기 구상 단계에서 평가원의 몇몇 연구원들은 이 과목이 일종의 과학추리 시험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점도 있어서 『추리논증』 초기의 내용 분포는 과학기술이 비중이 높고 법학은 미미하지만, 2010학년도 이후 ‘법적 논변’ 영역의 문항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의사/정책 결정’ 영역은 정치학, 행정학 등의 제재들을 염두에 두고 설정된 항목인데 출제 위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고사지경에 이르른 것이지 법적 논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이 영역의 문항이 소외된 것은 아니다. 시험의 내용 영역 상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치, 행정, 정책학 등, 정책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서 좋은 제재를 발굴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 표 6 > 논술 문항의 내용 분포

	예비	2009	2010	2011	2012	2013
인문	***	**	*		*	*
사회		*	*	**	*	*
과학기술						

논술 문항의 경우, 초기에는 동양 고전, 서양 고전을 필두로 하여 철학적인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로 사회과학적, 법학적, 도덕적, 정책적 상황 및 판단과 관련한 문항들이 등장하고 있다.

2) 인지활동 영역 분포

5년간 기출 문항의 인지활동 영역 분포를 검토해보면, 법학적성 시험의 출제가 독서력과 추리력, 비판력 등의 사고력을 골고루 묻기 위한 인지활동 영역의 균형잡기에 있어서 대체로 크게 실패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게 된다.

<표 7> 언어이해 문항의 인지활동 영역 분포

	예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어휘어법	4	4	3	3	3	3	20
분석	14	11	10	13	10	11	69
추론	13	16	14	8	13	8	72
비판	6	5	4	7	3	8	33
창의	3	4	4	4	6	5	26
총문항수	40	40	35	35	35	35	

우선, 『언어이해』에서 어휘어법 문항은 그 타당성이나 적실성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하고, 다른 인지활동의 균형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추론 문제가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 문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이러한 의심은 더 강화되는데, 그동안 『언어이해』는 독서력 내지 독해력 일반을 측정하려고 했다고보다는 지문에서 설명된 개념이나 이론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추리할 줄 아는가 묻는데 치중해 왔다고 보인다. 아마도 이것은 『언어이해』 과목이 출발부터 독서력 측정 과목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않고, 대입수능시험의 ‘언

어 영역' 출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출제 관행을 유지한 데에서 온 폐해라고 보인다.

대입수능시험의 '언어 영역'의 경우 이해력을 '사실적 이해', '추리상상적 이해', '비판적 이해'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던 전통이 있었거니와, 그 중에서도 추리상상적 이해와 비판적 이해가 고등의 독서 능력 및 사고력을 측정하는 좋은 문항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십수년 간의 경험을 통해 잘 겪어왔던 것이다. 앞서 말한 바 있지만, 수능의 '언어 영역'이나 의치의학입문시험의 '언어추론' 시험의 경우, 한 과목의 시험에서 독해력 및 추리/비판적 사고 능력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려고 하므로, 이러한 문항 설계는 매우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추리/비판적 사고 능력을 별도의 과목으로 문도록 설계된 법학적성시험의 독해력을 묻는 시험에서 좋은 추리 문항이나 좋은 비판 문항을 구안하려고 애쓰는 것은 시험의 본령을 간과하는 일이다.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이 별개의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표 8 > 추리논증 문항의 인지활동 영역 분포

		예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추리	언어추리	5	6	10	16	12	12	61
	수리추리	8	4	5	5	4	2	28
	논리게임	7	7	2	3	5	4	28
논증	분석재구성	9	7	8	2	9	7	42
	비판반론	4	4	3	2	1	4	18
	판단평가	7	12	7	7	4	6	43
총문항수		40	40	35	35	35	35	

『추리논증』의 경우, 수리추리 문항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점이나, 과학기술을 제재로 다루는 제시문에서 수리추리적 문항을 피하

고 있는 점은 법학적성시험 주관처의 정책적 결정 탓이기도 하려니와, 시험의 하나의 특징일 뿐 잘못된 것은 아니다. 또, ‘언어추리’로 분류된 문항의 수가 2010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법학 관련 제재를 사용한 문항들을 ‘논증’ 영역의 문항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성격에 따라 ‘언어추리’ 영역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리논증』에서는 ‘언어추리’로 분류된 문항 중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제시문의 독해에 달려 있는, 이른바 ‘언어이해적’ 문항이 계속 보인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마치, 『언어이해』는 좋은 추리 문항을 내고 싶어하고, 『추리논증』은 짧은 지문을 가진 언어이해 문항을 내고 싶어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시험의 타당성을 훼손하는 사태로서 출제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로, 분석/재구성 문항, 비판/반론 문항, 판단/평가 문항의 비중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출제진이 문항의 인지활동유형 통제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여서 우려할 만하다. 제대로 된 시험이라면 논증의 각 단계를 이루는 인지활동에 대하여 늘 골고루, 균형 있게 묻고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출 문항에서 중요한 인지활동 능력을 측정하는 데 지침이 될만한 좋은 문항 유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문항 유형들도 있지만, 꼭 물어야 할 것들 것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는 영역도 또한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들로, 『추리논증』의 기출 문항들은 (a) 논증의 논리적 구조 파악하기, (b) 논쟁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간단하게 평가하기, (c) 이론 또는 가설과 그것을 지지/반대할 수 있는 사례들 간의 귀납적 관계 (강화/약화) 판단하기 등의 능력을 측정하는 좋은 문항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귀납 논증, 특히 유비 논증과 최선의 설명으로 가는 추리의 논증 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논증적인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능력임에도 한 번도 물어지지 않고 있다. 또, 논

증의 귀류법적 구조를 드러내는 구조 분석 문항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오류를 포함한 글에 대한 비판 능력을 묻는 문제도 너무 드물다. 이러한 문항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출제위원이 이러한 논증들에 대하여 늘 의식하면서 제시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시험의 출제 절차 상 제시문을 찾는 사람은 글들의 다양한 논리적 구조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문기에 적절한 제시문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제시문들이 글들의 다양한 논리적 특성들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는 인상을 줄 정도라면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결론

다음의 사항들을 다시 말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는다.

(1) 시험의 내용 영역의 균형은 시험 주관처의 정책과 방침 등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고, 변화하는 중으로 보이는 바, 이것은 각 학문 영역에 대한 공정한 배려나 학문 영역들의 텍스트 생산성의 현실 등과 충돌하지 않는 한, 시험의 타당성을 해치는 요인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법시험 준비생 집단이 법학적성시험을 통하여 법조계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법학도에 대한 시험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법학도에 대한 불공정한 우대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현실에 대한 적절한 고려로서 바람직할 수 있다.

(2) 시험 과목 간에 측정하는 능력이 천명된 바와 다른 것, 예컨대 『언어이해』가 추리/비판 능력을 묻고, 『추리논증』이 독해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묻는 것이 고쳐지지 않은채로 몇 년 간 계속되는 것은 시험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고쳐져야 한다. 『

언어이해』는 독서력, 독해력을 『추리논증』은 추리력/비판력을 묻되, 안정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과목의 이원분류표, 즉 문항틀 설계부터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3) 『추리논증』이 추리와 논증 양 영역에서 관련된 인지활동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배치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내용 영역에서 특정한 학문 영역의 텍스트가 지나친 비중으로 다루어진다거나 거꾸로 오랜 기간 배제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나, 현재까지 심각한 편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해력과 사고력의 다양한 측면들을 골고루 묻는 일은 시험의 취지가 살아나려면 인지활동 영역의 분포는 매 회합당한 정도의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4) 『추리논증』 시험은 논리적으로 다양한 성격, 다양한 구조를 가진 텍스트를 골고루 개발하는 데에서도 성공적인 것 같지 않다. 출제의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할 때에,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임은 인정되지만, 논리적 사고력에서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묻어지도록 어떤 식으로든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 시험은 제시문과 문항의 분포에 있어서 불균형하고 자의적인 시험이라는 지적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2010),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문제 및 법학적성시험 문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1-2012), 법학적성시험 문제.
- 김주훈 외 (2006), 『법학적성시험 연구 -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06-5.
- 정구향 외 (2008), 『법학적성시험 연구 - 개발을 위한 본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CRE 2008-4.
- 김주훈, 외 (2008), 『법학적성시험 개발·시행을 위한 후속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CRE 2008-8-1.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ambiguus@hanyang.ac.kr

LEET as a Reasoning Test

Chanhong Min

This paper briefs the history of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describes its basic design, classifies the problems of its three subjects: *Reading Comprehension*, *Reasoning and Argumentation*, *Essay* according to their content categories and to their cognitive element categories, and states important features and traits of the whole set of problems, and finally raises some questions about the validity and relevancy of the test.

Key Words: LEET, Reading comprehension, Reasoning and argumentation, Essay writing, Verbal reasoning, Analytical thinking, Critical thinking, Logical thinking.